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021. 9. 13. 개정 판 (시행 2021. 7. 30.) → 2022. 3. 7. 개정 판 (시행 2022. 3. 1.)

바뀜 2 · 신설 0 · 삭제 0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440/compare?from=1229&to=1271> · 내려받은 때 2026. 10. 21. 오후 10:08:02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업)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u>교내 e-러닝 학습관리시스템(e-class) 관련업무</u> 2. <u>교육콘텐츠 플랫폼 개발 및 제작</u> 3. <u>e-러닝 교육과목운영 및 지원</u> 4. <u>KOCW, MOOC 강좌 개발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5. <u>영상제작 및 미디어 장비 관리 운영</u> 6. <u>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u> 7.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제3조(사업)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2-03-07> 1. <u>학습관리시스템(e-class) 및 원격교육지원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u> 2. <u>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 및 품질 개선을 위한 사항</u> 3. <u>원격교육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법 연구·개발 및 지원</u> 4. <u>원격교육 질 관리 체제 구축·운영 지원</u> 5. <u>원격교육 교과목 운영 및 지원</u> 6. <u>강의 콘텐츠 제작실(스튜디오, 편집실) 운영 및 유지관리</u> 7.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격교육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09-13> ② 위원회는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대학소속 전임교원 중에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3인 이내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혁신단팀장, 원격교육지원센터팀장(간사) 및 심의에 필요한 업무 담당자를 초청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09-13> ③ 위원회는 다음 항목의 내용을 다룬다. 1. 센터의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에 관련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 ④ 위원장은 센터 사업계획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격교육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09-13> ② 위원회는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대학소속 전임교원 중에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3인 이내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혁신원팀장, 원격교육지원센터팀장(간사) 및 심의에 필요한 업무 담당자를 초청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09-13> ③ 위원회는 다음 항목의 내용을 다룬다. 1. 센터의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에 관련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 ④ 위원장은 센터 사업계획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문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사업)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학습관리시스템(e-class) 및 원격교육지원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 및 품질 개선을 위한 사항
3. 원격교육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법 연구·개발 및 지원
4. 원격교육 질 관리 체제 구축·운영 지원
5. 원격교육 교과목 운영 및 지원

6. 강의 콘텐츠 제작실(스튜디오, 편집실) 운영 및 유지관리

7.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제6조제2항 중 "교육혁신단팀장"을 "교육혁신원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